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167,748,435	215,032,453
일반회계		6,443,358,894	193,300,767
특별회계		724,389,541	21,731,686
	기타특별회계	724,389,541	21,731,686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4,370,616	131,118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55,149,083	1,654,47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9,911,158	12,297,33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867,207	146,01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500,000	135,000
	소방특별회계	244,838,503	7,345,155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	752,974	22,58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4,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 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